

30초만 생각하면 청렴한 세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



청탁 하기전 잠깐!
금품 받기전 잠깐!
딱 30초

청탁금지

법이 연고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청렴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모두가 꿈꾸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청탁금지법'이 만들어 갑니다》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1. 부정청탁 금지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금지
- 부정청탁 시 부정청탁 관련자 제재

2.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 포함)
- 금품등 수수 시 관련자 제재
- 기준금액 초과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3. 위반행위 신고 및 보호·보상

-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장치 마련
-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 지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 : 2016년 9월 28일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2018년 5월

발간등록번호
78-6460000-000457-06

2018년 5월 (제307호)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전라남도

법령정보 이용안내

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law.go.kr>
- 도·시군 및 타시도 자치법규
• <http://www.elis.go.kr>
- 공기업·출연기관 규정관리시스템
• http://211.39.94.161:8088/law_rule

이용가능한 법률정보

- 법제처(www.moleg.go.kr)
최근제·개정법령, 입법예고사항, 판례속보
- 대법원(www.scourt.go.kr)
사건검색, 최근개정법령, 판례속보
- 넷로(www.netlaw.co.kr)
판례를 대법원, 하급심, 헌법재판소로 구분 제공
- 대한민국법률정보(www.lawkorea.com)
입법예고, 법률만화 등
-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law.jeonnam.go.kr)
법무행정정보, 무료법률상담, 행정심판 등
- 법누리(yeslaw) : 입법예고, 법률뉴스 등
- 법무부,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특허청, 국회도서관, 노동부 등

자치법규 접속방법

- 전라남도 홈페이지를 통한 접속
• 전라남도청 → 정보공개 → 법무행정서비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클릭
- 전라남도 행정포탈을 통한 접속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ELIS) 클릭

도정방침

-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

- 1. 활기있는 지역경제
- 1. 소득높은 농축어업
- 1. 매력있는 문화관광
- 1. 온정있는 도민복지
- 1. 소통하는 창의도정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은

제·개정되는 새 법령과 자치법규를 도민에게 신속히 알리고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매월 법무상식지를 편집 발간·배부하고 있습니다.

「법무상식」지는

독자 여러분의 관점에서 설계하고 통합하여 개개인 필요와 욕구에 맞게 맞춤형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선해야 할 사항 및 개인별 법률체험사례 등 법무상식지를 알차게 꾸밀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더욱 유익하고 충실한 「법무상식」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무상식

- 편집에 참여한 사람들
• 법무통계담당관 박화현
• 법 제 팀 장 채희섭
김양현, 조신웅, 최지선, 채길병, 위영초

○ 보내실 곳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
TEL : (061)286-2623 FAX : (061)286-4740 · (행)2623



2018년 5월 통권 제307호

새로운 판례	2
법령해석사례(법제처)	22
행정심판 재결사례	54
생활법률 상담사례	67
법무단신	77
시행법령	96
솔로몬의 재판	98
참고자료	101



◆ 보신을 위해 개를 도살한 피고인들에 대해 동물보호법위반 죄를 인정한 사례

*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339, 1948(병합)

1. 범죄사실

피고인 △△△는 2017년 3월경 몸이 허약하여 보신을 위해 개를 도살하여 먹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에게 5만 원을 주고 동인의 개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에게 수고비를 주기로 하고 도살을 부탁하였다.

1) 피고인들의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년 3월 25일 12시경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도로에서 위 □□□으로부터 매수한 개 1마리를 피고인 ○○○의 오토바이에 끈으로 연결한 다음 피고인 ○○○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는 뒤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따라가는 방법으로 위 개를 강제로 데리고 가 위 오토바이에 매달려 뛰어가다 탈진하여 쓰러진 개를 계속 끌고 감으로써 개의 다리와 입 등에 찰과상 등을 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년 3월 25일 13시경 제주시 피고인 ○○○ 주거지 옆 헛간에서 피고인 ○○○은 위와 같이 끌고 온 개의 목에 밧줄을 연결하여 그곳에 설치된 쇠파이프에 건 다음 개를 손으로 들어올리고,

피고인 △△△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 개를 매달아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였다.

2) 피고인 △△△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년 7월 12일 23시 16분경 제주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경마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낮에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끈으로 개를 묶어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개에게 상해를 입힌 점, 약 500미터 이상의 거리를 개가 뛰어서 따라가지 못할 속력으로 달려 개가 쓰러진 채 끌려가도록 한 점, 이러한 장면을 여러 사람이 목격한 점, 그 후 피고인들은 개를 헛간으로 데려가 목을 매다는 방법으로 죽인 점,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는 음주운전까지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동물보호법위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는 간세포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은 79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횟수 등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유예한다.



◆ **관광지 지정이 추진되는 토지에 대한 건축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취소를 명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 사례**

* 대구고등법원 2017누4155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지 매입과 설계용역계약 체결 전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청지가 D 관광지 조성사업 지구에 편입된다는 안내를 하지도 않았던 점, 대구광역시 C군이 D 관광지 조성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원고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는 점, 대구광역시 C군 또한 이 사건 신청지의 인접 토지에 대규모의 유스호스텔을 신축하고, 그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공사를 하며, D 관광객 수송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문제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를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재산권행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축법 제11조 5항 제3호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고, 국토계획법의 규정 형식으로 보아 행정청에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재량권이 있으므로, 결국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등 참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량행위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등 참조).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나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신청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대구광역시 C군이 1990년대부터 지역명소인 D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벌여온 각종 사업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이자 D 등반을 위한 출발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대구광역시 고시 ‘D관광지 지정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의 지정면적 내에도 포함되어 있다), 사인에 의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지장 초래 여부,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및 난개발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신청지와 그 일대 지역은 현재 지역 명승지인 D의 출입구로서 수목이 우거진 임야인 점(일부 개발행위가 진행된 것은 D관광지 사업 등 공익 목적에 따른 것이다), 위 지역은 대구광역시 C군에 의하여 관광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점, 명승지와 D관광지 사업 등으로 관광객, 등산객 등의 출입이 급증하고 있는 점, 그 인근에 이 사건 신청 등으로 음식점 건물까지 들어설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할 관청인

피고는 이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존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관광지 사업부지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사인의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할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당시(2016년 5월 31일)에는 이미 대구광역시 C군에 의하여 구체적인 'D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되고(2016년 4월 18일), 'D관광지 지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까지 착수된(2016년 5월 9일)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재량행위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도시·군계획사업의 추진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신청지 매입과 설계용역계약 체결 전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가 D 관광지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D 관광지 사업의 추진 경위, 원고들의 토지 취득시기 및 원고들의 지위(지역 사정에 밝은 'F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아들로서 C군과 사이에 오랫동안 위 사업지에 포함될 토지에 관한 매매 협의를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신청지 등을 매수할 당시 위 사업의 진행 경과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C군이 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과 지역 명승지의 계획적인 개발, D관광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과 같은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 한국 체류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불법 체류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316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때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이란으로 귀국하면 이란 정부에 의하여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난민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난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13년을 불법체류하던 중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되어 있다가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난민신청을 한 것이 아닌지 그 동기가 의심되기는 하나, 원고가 국내 입국 후 기독교로 개종하였음을 사유로 한 체재 중 난민신청자인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개종으로 인한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이란 정부의 탄압, 난민인정여부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개종을 하였더라도 신변의 위협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난민신청을 미루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개종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이란인 친구인 B의 소개로 C교회를 알게 되어 2006년 4월 30일 C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였고, 2010년 2월 7일 C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지속하였고, 이란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기독교를 소개하거나 노방 전도 등을 통해 다수의 이란인들을 C교회로 데려오는 등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하였고, 특히 D, E 등을 전도해서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세례를 받게 하였다.

또한 C교회의 2017년 가을호 회지에는 원고에 대한 기독교 활동 관련 인터뷰 내용 및 사진, 국내 봉사활동 사진 등이 수록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C교회 집사인 이OO과 같은 교회 교인들은 원고의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을 탄원하고 있는바, 이상과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는 외부적으로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하여 원고의 신앙생활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공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합중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2016년 연례보고서, 영국 내무부의 2014년 국가 정보와 지침,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무부의 2013년 이란에 대한 국가정황자료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란인이 단순히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포교활동까지 나아갈 경우, 이란 정부에 의해 임의적인 체포와 심문을 당할 우려가 있고, 신체적·정신적 고문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종교를 공개할 경우 국가로부터 차별을 당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자신의 종교를 숨기기로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경우 적극적인 기독교 포교활동을 하여 그 활동이 외부적으로 상당히 공개되었으므로, 원고가 이란으로 강제퇴거될 경우 신체적·정신적 위해에 노출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 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의 직원이 회사 소유 배관자재를
빼돌려 판매한 행위로 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

*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1265

1. 인정사실

원고는 배관 및 철강 자재 등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2004년 4월경부터 2015년 7월 15일까지 원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배관 자재의 관리 및 납품, 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 C는 산업기계, 도장설비, 철구조물 제조 및 설치 등의 업무를 하는 개인 사업자이자 피고 D의 대표자이다.

피고 B는 피고 C를 비롯한 거래처 사장들에게 밸브, 강관, 철판 등 배관자재를 거래시가보다 싸게 팔테니 개인적으로 거래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 C가 이에 동의하여 피고 B은 원고 몰래 원고 소유의 배관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고 한다)를 피고 C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왔다.

피고 B는 '2014년 5월 30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원고 소유의 매입원가 1억4,394만5,660원 상당의 자재를 피고 C에게 1억281만8,33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 B이 판매한 자재의 매입원가가 1억2,852만2,912원(그 중 피고 D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매입원가는 9,151만5,662원이다)으로 인정되어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 C는 '피고 B가 매입 원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제의를 받고서도 그것이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매입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되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업무상 보관하던 원고 소유 이 사건 자재를 원고 몰래 판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가 판매하는 이 사건 자재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의 매입 원가 1억2,852만2,912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1억2,852만2,91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D는 대표자인 피고 C가 위와 같이 불법행위로 함으로 인해 원고에게 매입원가 9,151만5,662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배판 자재 매입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1,285만2,291원(1억2,852만2,912원의 10%, 피고 D에 대해서는 9,151만5,662원의 10%인 915만1,566원)도 원고의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이 사건 자재를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세액만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을 것이므로 위 부가가치세액을 원고의 손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C, D의 책임 제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8.2. 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참조).

원고의 자재를 고의로 빼돌린 피고 B와 달리 피고 C, **테크는 피고 B가 판매하려는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D가 3년여라는 긴 시간 동안 원고의 자재를 횡령해 왔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만일 원고가 재고관리 등을 철저히 하였다면 보다 일찍 범죄사실을 발견하고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C, D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 C와 D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피고 C의 경우 1억281만8,329원(1억2,852만2,912원×80%), 피고 D의 경우 7,321만2,529원(9,151만5,662원×80%)이 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2852만2912원,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억2,81만8,329원, 피고 D는 피고 B, C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7,321만2,529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 종료시점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년 7월 1일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년 3월 23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형사재판에서 일부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11871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폭행, 공갈 등의 범죄사실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해자들의 허위 진술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신뢰하여 원고를 기소하고, 검사는 1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항소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203096 판결 등 참조).

갑 1호증, 갑 2호증, 을 1호증부터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무죄 부분의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해 사실에 관해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번복하거나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등이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음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등에 기재 원고를 기소하고 무죄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수사기관의 업무집행에 위법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집합건물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음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인도청구 등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5다3471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와 같은 건물 부분이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태만으로는 그 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자 2009마1449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1동의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을 스스로 구분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자신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또는 자신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 등을 상대로 그러한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멸실등기절차의 이행이나 위와 같은 건물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 경매절차에서 해당 건물 부분을 매수하여 구분건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멸실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해당 건물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 원고가 집합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집합건물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이후의 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인도청구 등을 한 사건에서, 지금이라도 용이하게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청구 등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례



◆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이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6다39897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과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법 제정 전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줄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면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게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그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구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 제2항과 제7항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경우 종전 조합원으로서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영농조합법인 채무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유한책임사원으로 되기 전에는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구 농어업경영체법이 2015. 1. 6. 개정되면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을 그 납입한 출자액의 한도로 제한하는 규정(제17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 역시 구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영농조합법인에 계란을 공급한 후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조합원들을 상대로 대금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원심은 법인격 있는 영농조합법인만이 채무를 부담할 뿐 그 조합원인 피고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구 농어업경영체법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들은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영농조합법인이 피고들을 비롯한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조합원인 피고들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파기 환송한 사안임

◆ 여수·순천사건 관련 구례지역 민간인 희생자들의 손해 배상청구 사건

* 광주고등법원 2017나13464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대한민국) 소속 군인,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고한 망인들을 살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관리감독자로서 망인들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각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실령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망인들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소멸시효의 완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1921년 4월 7일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1951년 9월 24일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회계법 제32조),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구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한 1948년 10월경부터 1949년 7월경까지의 시점으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후인 2016년 4월 29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권리남용 및 상당한 기간의 도과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소제기 기간을 고지하거나 이를 명시한 법률을 제정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무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산하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인 망인들에 대하여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들의 유족들인 원고들로서는 위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을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신뢰를 부여하게 된 채무자의 행위 등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채무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목적과 진정한 의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위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인 2008년 7월 8일부터 3년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약 7년 9개월이 경과한 2016년 4월 29일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권리남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766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소제기 기간을 고지해야 한다거나 피고가 소제기 기간을 명시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망인들의 사망연월일 등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2014년 6월 12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여 2015년 11월 30일경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완료하였으므로, 위 ‘상당한 기간’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국가는 ‘유족들이 원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불과하고(갑제26호증), 가족관계등록부에 망인들의 사망연월일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사례 1

해양수산부 -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에 대한 수산물산지위판장 외 장소에서의 매매 또는 거래 제한의 범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관련)

● 질의요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수산물 산지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매매 또는 거래가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출하 단계의 도매·소매 거래를 의미하는지?

● 회 답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수산물 산지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매매 또는 거래는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를 의미합니다.

● 이 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수산물산지위판장”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설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서는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수산물산지위판장(이하 “위판장”이라 함)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이하 “매매등”이라 함)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 매매 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에 따라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매매등이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출하 단계의 도매·소매 거래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물유통법에서는 “매매등”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이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에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에 대한 매매등의 장소를 “위판장”으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위판장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시설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13조의2는 일부 수산물의 출하의 경우 “위판장에서만 도매 거래”를 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일부 수산물의 매매등이 제한된다는 것은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산물유통법은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같은 법 제3장에서 수산물 도매 거래

시설인 수산물 위판장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3조의2를 위판장의 개설구역(제11조), 위판장개설자의 의무(제13조), 위판장 위생 관리기준(제13조의3) 등과 함께 제3장에서 규정한 것은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에 한정하여 그 매매등의 장소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를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소비자를 가장한 생산자의 불법 출하 행위, 선택적 계통출하(系統出荷) 등으로 인해 가격교란이 발생할 수 있고,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원산지 표시 등이 제대로 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는 출하 단계의 도매·소매 모두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에 따른 “매매등”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등도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생산자의 출하지 선택권, 소비자의 구매지 선택권 등을 침해하고, 해당 수산물의 운반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의안번호 제2001257호 수산물유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같은 법 제60조제2호에 따른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권리제한과 형벌부과에 관련된 규정은 그 문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및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 가격교란 방지 등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 달성에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 해당 규정을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9. 29. 회신 17-0474 해석례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산물유통법 제13조의2에 따라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매매등은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에 대하여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등이 제한되는 범위가 도매 거래로 한정되는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2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의 단위(「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관련)

● 질의요지

법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회 답

법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 유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제1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제2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제3호)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법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까.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가 도입된 취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학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영업허가제 신설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인바(2013. 6. 4. 전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이유 참조),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허용하는 허가의 요건과 기준은 유해화학물질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영업허가를 신청한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에 대해서만 허가를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에서는 “사업장 주소”, “사업장 면적”, “사업장 매출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특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한 허가 단위가 사업장인지 여부가 법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사업장별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유사 입법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영업의 허가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례 3

민원인 - 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단지별로 각각 배치해야 하는지?

● 회 답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단지별로 각각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함) 등은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단지별로 각각 배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일정한 자격과 소양을 갖춘 주택관리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지, 공동관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반드시 공동주택단지별로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각각 배치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관리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안(제3호나목) 등에 관하여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에게 통지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는 개별 사정에 맞게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단지별로 각각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 전체에 대하여 배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공동주택단지별로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각각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동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 전체에 대하여 공통되는 관리업무를 일관되게 처리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단위별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주택단지별로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각각 배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가 다른 공동주택에 취업하면 그 자격이 취소되고, 같은 법 제100조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바,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대상 및 형벌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단지별로 각각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단지별로 각각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하지 않은바, 해당 규정을 정비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4

국토교통부 -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 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의2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후 그 자동차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후 그 자동차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그 자동차의 사용제한·금지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후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이 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56조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않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나(본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단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제1호) 등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같은 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화물자동차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후 그 자동차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시·도지사가 같은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를 한 경우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같은 호에 따른 처분 대상자는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를 한 행위자 본인”이라고 할 것인데, 그 행위자가 자동차의 사용제한·금지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한 경우, 양도인에 대한 처분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그 양수인에 대하여 자동차의 사용제한·금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법 제16조제6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 양수의 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영업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영업재산이 유기적 일체로서 이전되면서 운수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종전 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처분사유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8960 판결례, 법제처 2009. 3. 12. 회신 08-0305 해석례 참조),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인의 법적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그 자동차의 소유권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양도의 경우와 달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 양도인의 제재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화물자동차법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양도인이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를 했다는 사실 또는 그로 인해 자동차의 사용제한·금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 등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양수인은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가 존재하였음을 사전에 알지 못한 채 그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까지 양도인에 대한 제재사유가 양수인에게 일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본다면 제재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양수인이 입게 될 손실이 더 크다는 점(법제처 2015. 6. 4. 회신 15-0277 해석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에 사용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제한·금지 처분을 할 수 없다면,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를 한 사람이 그 자동차를 가족에게 양도한 후 실제로는 본인이 계속 사용하거나,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를 한 사람들이 서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맞교환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제한·금지 처분을 회피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없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법 제67조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를 한 자가 그 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같은 법 제67조제7호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되는바,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화물자동차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후 그 자동차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내에 대하여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화물자동차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시·도지사가 같은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에 사용된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그 후 자가용이 아닌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용제한·금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되는 등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의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함)나 등록번호 등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자동차는 동일성을 유지하여 동일한 등록원부에 의해 관리되고, 다만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변경등록 해야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 자동차의 동일성이 사라지거나, 변경등록 전의

자동차에 대하여 발생하였던 종전의 위법사실 및 그로 인한 처분사유가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용도가 영업용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위법행위에 따른 사용제한·금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를 한 자가 자동차의 사용제한·금지 처분을 받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탈법적으로 면탈할 수 있게 될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화물자동차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례 5

제주특별자치도 -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등 관련)

● 질의요지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 회 답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유

「인감증명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함)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에서는 대리인이 인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함)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가목에서는 재외국민 및 해외거주(체류)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재외공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에서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외국민이 아닌 자”는 본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 할지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위임자가 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에 본인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임을 증명하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93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14032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년 1월 1일 시행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이하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종전에는 외항선원 등 일시출국자의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을 발급 신청 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재외공관의 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인바(구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 전단에서는 “해외거주(체류)자”의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외국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 체류하기만 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에서는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재외국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영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는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체류 중인 자가 같은 영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해석이 인감증명법령 규정들 간의 규범조화적 해석에 부합하고, 본칙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구비서류나 신청 요건을 서식

에서 추가하여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법 원칙(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참조)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는 해외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아닌 자의 대리인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①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고 발급 받는 방법, ②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는 대신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함께 제출하여 발급 받는 방법으로 각각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해외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 반드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가목에 따라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는바,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해당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6

환경부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범위(「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받을 수 있는 행위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이동형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등의 설치가 포함되는지?

● 회 답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받을 수 있는 행위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이동형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등의 설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유

「수도법」 제7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함)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같은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받을 수 있는 행위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이동형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등(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함)의 설치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수도법령에서는 해당 법령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의 설치로 한정되는지 여부” 등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것이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의 대상 중 하나로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

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이하 “신축등”이라 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작물은 신축 등을 할 수 있는 인공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공작물이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모두 갖추지는 않아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하나의 규정에서 건축물과 함께 신축 등의 대상으로 규율될 필요성이 있는 정도의 공작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이 바로 그러한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령 체계상 같은 조 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공작물의 설치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의 설치”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각 호에서는 허가를 받아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로서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제4호가목), 태양에너지 설비(제7호) 등 건축물에 준하는 정도의 토지 정착성이 있는 공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에 따른 공작물에 자동차와 같이 그 자체에 이동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있거나 이동이 용이한 물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수도법령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작물을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로 한정하는 취지는,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공작물의 경우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소지가 있는 반면,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관거(管渠)·수로 등을 통해 일정한 지점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므로 상수원의 관리가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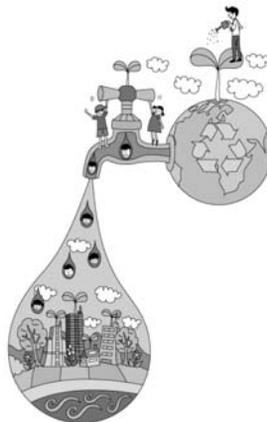
그렇다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는 구역으로서,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도법」 제7조제3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규정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호에서 행위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의 설치”의 의미를

넓게 보아 음식판매자동차와 같이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공작물도 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한 공작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여 상수원을 확보하고 수질을 보전하려는 수도법령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받을 수 있는 행위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설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범위에 음식판매자동차와 같이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공작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그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음식판매자동차 설치를 허가할 필요가 있다면 그 근거를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7

인천광역시 서구 및 민원인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 질의요지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탑승인원수의 규모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 회 답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이 유

「주택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주택의 구조·설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서는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을 설치하되,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로 하되, 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건축주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 제1호에서는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탑승인원수의 규모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즉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제처 2009. 3. 18. 회신 09-0041 해석례 참조), 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법」에서 주택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3. 23. 회신 17-0047 해석례 참조).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건축법」 제6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서는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계산할 때 “탑승인원수”에 따라 해당 승강기 대수를 몇 대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탑승인원수”에 따른 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에 대해서는 「건축법」 별표 1의2를 적용 또는 준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상은 승강기의 “구조”에 관하여 규정한 「건축법」 제64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승강기의 구조)와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지, 승강기의 “구조”에 관한 사항이 아닌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는 준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 보면, 2013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2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 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서는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계단실마다 1대 이상 설치해야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3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2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서는 이 사안의 주택에 대하여 승용승강기를 2대 이상 설치하도록 그 기준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최근 많이 건설되고 있는 홀형(한 계단실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구조) 공동주택에 대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최소기준을 높여 입주자의 편의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2013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2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그 의미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대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비고 제1호와 유사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에 입법 미비가 있었다거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건축법」의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비고 제1호에 따라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른 설치 대수보다 낮은 대수를 설치하게 되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주택법」과 「건축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어느 하나의 법령에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별도의 입법 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8

전라남도 여수시 -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질의요지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3호가목 본문에 따라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 회 답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3호가목 본문에 따라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 이 유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을 설치해야 하되(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단서) 규정하고 있고,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라 함)는 폐수의 처리, 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함)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3호가목 본문에서는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3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면제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배출시설의 전부·일부에 대한 개선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방지시설 설치면제자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3호가목 본문에 따라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방지시설 설치면제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폐수가 외부로 배출

되도록 한 경우에 그 위반이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 위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방지시설 설치면제자가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율대상에도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① 같은 법에서는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에 대한 준수사항(같은 법 제35조제2항)과 그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같은 법 제35조제3항 및 제82조제1항제3호) 등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자와 구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②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그 내용상 방지시설의 설치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방지시설 설치면제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자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호의 규율대상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결국 폐수의 배출과 관련하여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위반이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자”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해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0호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이 부과되거나, 같은 법 제76조제3호 및 제81조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는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방지시설에 수질오염 물질을 유입해야 하는 의무를 전제하고 있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유추해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지지설 설치면제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3호가목 본문에 따라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사업자 또는 방지지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지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방지지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자”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지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와 방지지설 설치면제자가 폐수를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과 형사처벌 여부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바, 폐수 배출과 관련된 위반행위의 실질과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1

【2017-17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사업정지 9개월 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7. 20. 청구인에게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업정지 9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로 ○○○번지'○○주유소(대표 박○○)'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6. 27.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에서 실시한 석유제품 품질·유통검사 결과 이동판매차량(○○ ○○버○○○○)을 이용하여 등유를 주유한 원바디차량 연료탱크의 시료가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이 약 95%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으로 판명되었고, 또한 위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원바디차량(○○ ○○바○○○○)에 주유하는 현장에서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17. 7. 20.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사유로 사업정지 9개월(2017. 8. 1.~2018. 4. 30.) 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고의성이 없이 잘못된 판단과 과실에 의해 발생한 점, 처분으로 청구인의 생계의 어려움과 파산에 이를 수 있는 점, 여성의 몸으로 병중에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봉양하고 세 자녀를 성실하게 키워온 점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감경)를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7. 20. 청구인에게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사업정지 9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주장

- 1) 청구인은 2017. 6. 27. 19:00 경에 유류 이동판매차량(○○ ○○ 버○○○○)을 이용하여 등유 278ℓ를 경유 차량인 11톤 화물차량(○○ ○○바○○○○/운전자 조○○)에 주유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다. 금융기관에서 보증금 3천만원을 대출받아 주유소를 인수한 후 청구인의 동생(박○○)을 관리인으로 고용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매출이 저조하여 수익이 아주 적은 상태로 최근에는 매달 적자를 보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주유소를 인수하기 전 임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을 승계 받아 이번 건에 가중처분 됨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 2) 주유소 종업원(관리소장 박○○)의 유류관리 행위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이 사건에 있어 계획적이거나 고의성이 없고, 순간 잘못된 판단에 따른 과실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처분이 있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사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생계의 어려움은 물론 파산에 이를 수 있는 점, 여성 혼자의 몸으로 병중에 있는 시어머니 및 남편을 봉양하고 세 자녀를 성실하게 키워온 훌륭한 어머니라는 점 등 청구인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정지 9개월의 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취소(감경)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 1) 사업정지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수단으로서 영업

자나 허가 등에 따른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 가하는 제재로서 의무 위반 그 자체에 대하여 제재를 함으로써 행정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주유소 사업장 내에서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 ○○버 ○○○○)에서 등유를 경유차량(○○ ○○바 ○○○○)에 278ℓ를 주유한 객관적 사실에 따라 처분한 것이다.

-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8조에 의하면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2016. 6. 29. 피청구인에게 석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였고, 그 당시 부속서류인 부동산 임대계약서 특약사항에 “지위 승계함에 있어 전 임대인이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위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당사자 사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날인한 계약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주유소 종업원(청구인의 동생 박○○)은 2014. 3. 18. ○○주유소를 지위 승계받아 2014. 3. 26.까지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2014 3. 27.부터 안○○(청구인의 모)이 2014. 9. 5.까지 주유소를 운영한 적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동산 업자에게 속아 전 임대인이 행정처분을 승계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는 “석유판매업자가 등유 등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란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 제품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1. 일반기준 가목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며,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1/2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목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등유 등을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경우 최근 3년간으로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별표1] 개별기준 다목 15)마. 바.는 행정처분기준으로 등유 등을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6개월, 그 밖의 경우 사업정지 3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 4) 행정처분권자는 “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위반행위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처분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1/2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 제출서를 살펴보면 감경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여러 이유를 들어 재량권 일탈 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29조 제1항 제1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제17조 [별표2]

5. 판 단

가. 사건경위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서면 등 기타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는 2017. 6. 27. 청구인 소유의 이동판매 차량(○○ ○○버○○○○)을 이용하여 등유를 경유 차량인 웅바디 차량(○○ ○○바○○○○)의 연료로 278ℓ를 판매하였고, 그 현장에서 웅바디차량(○○ ○○바○○○○)의 연료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석유제품 품질·유통검사를 실시하였다.
 - 시료채취확인서 : 시료3(등유), 시료4(등유), 시료5(등유), 시료6(자동차용경유)
 - 시료6은 웅바디차량(○○ ○○바○○○○)의 연료탱크에서 채취
- 2)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는 2017. 7. 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석유 제품 품질·유통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 석유판매업소

업소명	대표자	주소	시 료 채취일	제품명	시료 번호	점검내용	판정결과
○○ 주유소	○○○	○○군 ○○면 ○○로 ○○○	2017. 6. 27.	등유	3,4,5	차량용 이외의 석유제품 등을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 위반여부 점검	법제39조제1항제8호 위반*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준수 여부 점검	법제39조제1항제8호 시행령제43조 제1항제1호 위반*

* 시료번호 3, 4, 5는 등유의 품질기준에는 적합하나, 이동판매차량(○○버○○○○)을 이용하여 등유를 웅바디차량(○○ ○○바○○○○)의 연료로 판매하였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 위반임

□ 사용자

업소명 (차량번호)	사용자	주소	시 료 채취일	제품명	시료 번호	판정결과
○○○○ (○○○○바○○○○)	조○○	○○군 ○○면 ○○길 ○○	2017. 6. 27.	자동차용 경유	6	법제39조제3항 위반*

* 시료번호 6은 ○○주유소가 주유한 원바디차량(○○○○바○○○○) 연료탱크에서 채취한 시료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이 약 95%로 혼합된 제품이며, 사용자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 제3항 위반임

3) 피청구인은 2017. 7. 7.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에 따른 처분사전(의견 제출)통지를 하였다.

- 내용 : 사업정지 9개월 또는 과징금 1억1천5백만원에 따른 의견청취
-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등

4) 청구인은 2017. 7. 17. 의견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 주요내용 : 본 사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있을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여 주기 바람

5) 피청구인은 2017. 7. 20.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9개월 처분을 하였다.

- 처분원인 : 차량용 이외의 석유제품(등유) 등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 (2차 6개월)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 방법 위반(가중 3개월)
- 행정처분 : 사업정지 9개월(2017. 8. 1. ~ 2018. 4. 30.)

6) 직권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7. 7. 20. 청구인을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경찰서장은 현재까지 청구인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청구인은 2017. 7. 26.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위원회에서는 2017. 7. 28.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였다.

- 8) 피청구인이 제출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변경사항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유소는 2016. 6. 17. 대표자 변경(조○○→안○○), 2016. 7. 5. 안○○에서 청구인(박○○)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 주유소의 전 대표자 조○○은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전남 행심 2015-466) 결과(사업정지 3개월→45일로 감경)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5. 20. 사업정지 45일 처분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판례(대법원 2012.5.10. 선고 2012두1297 판결)에 따르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인 주유소 직원의 의도적 행위인지와 무관하게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의 품질검사 결과에서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95% 혼합된 가짜석유 제품으로 확인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 2)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등유를 경유용 자동차에 판매한 것과 영업방법 등 위반은 화물차(11톤 왕바디차량) 운전자(청구외 조○○)의 간절한 부탁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서 계획성이나 고의성이 없고 순간 잘못된 판단에 따른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자로서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엄격한 행위의 금지사항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볼 때, 화물차 운전자의 부탁만으로 석유판매업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위반경위나 위반 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처분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면밀한 석유제품 관리로 가짜석유가 제조, 반입, 저장, 판매가 되지 않도록 고의성의 유무에 상관없이 철저한 관리와 확인 및 검증의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 ①청구인은 주유소를 인수하기 전 임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을 승계 받아 이번 건에 가중처분 됨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석유판매업 변경신고 당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부동산임대계약서 특약사항에 “지위 승계함에 있어 전 임대인이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변경사항에 주유소 종업원(청구인의 동생 박○○), 전 대표 안○○(청구인의 모)이 각각 같은 주유소를 운영한 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행정처분 승계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점, ②이 사건은 가짜석유 주유·판매와 영업범위·방법 위반으로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및 2차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가중처분의 대상이 되는 점, ③이 사건 “가짜석유”가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95% 혼합되었다는 사실은 중대한 위반사항에 해당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석유유통질서 확립의 공익목적과 처벌의 필요성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가 중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사례 2

【2017-214, 출산장려금 지급중단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7. 19. 청구인에게 한 출산장려금 지급중단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7. 19. 청구인에게 한 출산장려금 지급중단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년 청구의 김○○와 혼인하여 2014년. 김△△, 2016년 김□□을 출산하였고, 구 ○○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2012. 1. 2. 일부 개정조례 제934호 및 2015. 1. 6. 일부 개정조례 제1096호)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8. 27.부터 2017. 2. 20.까지 6차에 걸쳐 1회 50만원씩 총 300만원(현금 175만원, 상품권 125만원 / 김△△), 2016. 7. 12.부터 2017. 1. 20.까지 2차에 걸쳐 총 100만원(현금 75만원, 상품권 25만원 / 김□□)의 출산장려금을 지급받던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김○○가 2016년 청구인과 이혼한 후 2016. 11. 14. 전라북도 ○○시로 전출하였음을 확인하고, 구 ○○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2015. 1. 6. 일부 개정 제1096호)에 따라 부모 중 1명이 ○○시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7. 19. 출산장려금 지급중단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시 관내 주거지에서 자녀와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이혼 후 부모 중 1명이 전출하였다고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단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7. 9. 1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7. 19 청구인에게 한 출산장려금 지급중단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청구인은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이면서 ○○시 소재에 주소를 두고 자녀와 줄곧 거주하고 있는데, 이혼한 전남편이 전출했다는 이유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

-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급부행정의 영역 내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는 재정자립도가 13%에 불과한 ○○시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여 ○○시의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는바, 청구인은 부모 쌍방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 2)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인한 일방의 주민등록 이전을 예외규정으로 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이 사건 조례와 같이 시혜적으로 출산장려금을 규정하는 경우 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 지급방법 및 금액 등을 규정하는데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할 것인 점, ②부모 중 일방이 ○○시 외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출산장려금의 재원조달 및 입법목적인 ○○시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 방지 및 출산과 양육환경 조성 등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 ③부모가 사망하거나 미혼모인 경우는 법률적으로 부모가 쌍방이 존재할 수 없는 경우로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고,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입법자인 ○○시에게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 구 「○○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2015. 1. 6. 일부 개정 제1096호)
(이하 ‘이 사건 조례’)

5. 판 단

가. 사실인정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서면 등 기타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14년 청구외 김○○와 혼인하여 2014년 김△△, 2016년 김□□을 출산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출산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받았다.

□ 출산장려금 지급내역

연번	신생아	지급대상	지급일자	회차	지급금액	비고
		계				
1	김△△	박○○	'14.08.27.	1	500,000원	현금 250,000원, 상품권 250,000원
2	김△△	박○○	'15.02.17.	2	500,000원	현금 250,000원, 상품권 250,000원
3	김△△	박○○	'15.08.25.	3	500,000원	현금 250,000원, 상품권 250,000원
4	김△△	박○○	'16.02.23.	4	500,000원	현금 250,000원, 상품권 250,000원
5	김△△	박○○	'16.08.22.	5	500,000원	현금 250,000원, 상품권 250,000원
6	김△△	박○○	'17.02.20.	6	500,000원	현금 500,000원
7	김□□	박○○	'16.07.12.	1	500,000원	현금 500,000원, 상품권 250,000원
8	김□□	박○○	'17.01.20.	2	500,000원	현금 500,000원

- 2) 청구인은 2016. 8. 19. 청구외 김○○와 이혼하였고, 전남편 김○○는 2016. 11. 14. 전라북도 ○○시에 전입신고 하였다.
- 3) 피청구인은 2017. 7. 1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산장려금 지급중단을 통보하였다.

□ 출산장려금 지급중단 사유

- ○○시 출산장려지원금 제도는 「○○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 명시하듯 ○○시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제도로써, 「○○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급대상의 범위) “신생아의 부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 가정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귀하께서는 부모 중 1명이 ○○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
- 4) 청구인과 위 두 자녀는 2014. 2. 12.부터 처분일 현재까지 ○○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고, 위원회가 직권으로 도내 22개 시·군의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 또는 모의 관내 거주 및 이혼에 의한 편부모 가정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군은 20개 시·군(○○시, ○○군 제외)에 달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이 사건 조례 제5조의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출산 후 24개월 이내)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 가정’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부모의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부모 중 일방의 주민등록 이전의 경우를 예외규정으로 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조례상 부모 쌍방의 거주요건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 2)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 보면, ①출산장려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한다는 등 명시적인 제한요건이 없음에도, 이 사건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점, ②이 사건 조례 제3조 제4호에서 출산장려금의 정의를 “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녀를 출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혼·별거·직장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한 사람만 관내에 거주하게 된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점, ③이혼·별거 등과 같은 사유가 전입 이전에 발생해 부부 중 한명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장려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2016. 9. 12.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참조)과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혼으로 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관내를 이탈하더라도 출산장려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는 점, ④2014년 ○○○○○○도시 준공 이후 유입인구가 급증하고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도 크게 늘어나면서 장려금 지급이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한 최근의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출산 이후에도 건전한 양육환경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례 제5조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부모의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해 부모 쌍방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단한 이 사건 처분은 조례의 불명확한 요건에 대해 합리성을 결여한 해석에 따른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아동 / 청소년



의약품에 어린이 보호용 안전포장이라고 적혀 있던데 모든 의약품이 안전포장이 되어 있나요?



경구(經口)로 투여되는 의약품은 5세 미만의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 어린이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 “안전용기·포장”이란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합니다.

☞ 경구(經口)로 투여되는 다음의 의약품에는 안전용기·포장을 해야 합니다.

- ① 1회 복용량에 30밀리그램 이상의 철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 ② 아스피린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 ③ 개별포장(날알모음포장 또는 1병 단위의 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를 말함)당 1그램을 초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 ④ 개별포장당 1그램을 초과한 이부프로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 ⑤ 소아용의약품 중 내용액제
- ⑥ 개별포장당 0.045밀리그램을 초과한 로페라마이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 ⑦ 개별포장당 나프록센 성분이 250밀리그램을 초과한 나프록센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 ⑧ 개별포장당 케토프로펜 성분이 50밀리그램을 초과한 케토프로펜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 ⑨ 개별포장당 66밀리그램을 초과한 디펜히드라민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선물로 받은 어린이 화장품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품에 사용기한이 있다고 하던데 어느 부분에 표시되어 있나요?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1차 포장에 기재·표시되어 있습니다.

◆ **화장품의 1차 포장에 표시된 기재내용 확인**

☞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합니다.

☞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표시되어 있습니다.

- ① 화장품의 명칭
- ②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 ③ 제조번호
- ④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아이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안내판이 있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주변에 지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표지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 교육감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 안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다음의 행위 및 시설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②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③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폐수 종말처리시설
- ④ 폐기물처리시설
- ⑤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 ⑥ 도축업 시설
- ⑦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준이 있나요?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국가예방접종을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 일본뇌염(약동화생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간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Flu(인플루엔자),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자녀가 학교에서 건강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어떤 검사를 하는지 항목이 궁금합니다.



학교의 장은 어린이에 대해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해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

◆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초등학교·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 ②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 ③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에 따른 유치원 원아

☞ 어린이 건강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신체의 발달상황
- ② 건강조사
- ③ 정신건강 상태 검사
- ④ 건강검진
- ⑤ 신체능력검사
- ⑥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
- ⑦ 결핵검사(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
- ⑧ 구강검사(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살까봐 아이를 놀이터에 보낼 때도 불안합니다.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는 건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 ☞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릅니다.
- ☞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처분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공개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우편으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 ☞ 제공받을 수 있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및 전자장치 부착여부입니다.
-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만일 우편으로 받지 못하셨다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이 성폭력을 당한 후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후 범죄자를 찾아 처벌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 **공소시효**

- ☞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 ☞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등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 ☞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 ☞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시간 선택제와 섯다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네, 인터넷 게임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게임시간 선택제**

- ☞ “게임시간 선택제”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게임사이트에 일정 시간이나 기간동안 이용을 제한해 주도록 신청하면 그에 맞게 접속이 제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 신청방법은 게임사이트를 방문해 게시판 등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섯다운 제도**

- ☞ “섯다운 제도”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정(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 즉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오전 0시)이 넘도록 사용할 경우 인터넷 게임이 중단되고, 오전 6시까지 재접속이나 새로운 접속을 할 수 없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 ☞ 섯다운제의 적용대상은 인터넷게임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할 수 있는 게임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영리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게임에 대해서는 적용이 유예됩니다.
- ☞ 이를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청소년의 PC방 이용제한**

- ☞ 청소년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오락실, PC방 등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 ☞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할 경우에는 출입시간 외에도 PC방을 이용할 수 있어요.
- ☞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해 청소년을 PC방 등에 출입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자녀가 따돌림과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학교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학교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는 학교 및 학교폭력 관련 단체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청소년상담원 지역 상담실 및 사이버경찰청 등 각종 청소년상담기관을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교장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학교 내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 ☞ 교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교장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외의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단체

- ☞ 학교폭력 피해자는 다음의 학교폭력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 관 명	홈페이지	상담전화
117학교폭력신고센터	http://www.safe182.go.kr/	☎117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SOS지원단	http://www.jikim.net/sos/	☎1588-9128
학교폭력 긴급전화 (전국 시·도교육청)	http://www.wee.go.kr/	
여성 긴급전화	http://www.1366call.or.kr/ (전남센터)	☎지역번호+1366 *지역별 운영



초등학교 5학년인 제 아이가 같은 반 친구에게 일방적으로 맞아 다리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하려고 하는데, 초등학생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14세 미만이라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형사미성년자의 처벌

- ☞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나이와 죄질에 따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법」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 즉, 학교폭력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14세 이상이라면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 됩니다. 「형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절차를 거쳐 형벌이 확정됩니다.
- ☞ 「소년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 사건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고, 감호위탁 또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
단신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퇴직자 접촉시 신고하라”

공무원이 기업이나 로펌 등에 취업한 퇴직 동료나 선후배 등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이를 모두 신고하도록 한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이 4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조계 공직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퇴직공직자의 로비나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불멘 소리도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날 공무원의 윤리규정을 대폭 강화한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민간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부하 직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데,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을 제외한 국가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과 국회·대법원·헌재·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을 두고 있고, 행정부 소속인 검찰도 대검찰청 훈령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따로 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새로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중 현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의 사적 접촉을 금지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기관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등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는 해당 퇴직자가 민원이나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적 접촉 유형과 신고 내용 등은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되며, 공무원과 해당 소속기관 퇴직자가 만날 때에만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권익위 퇴직 공직자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만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같은 특정행위를 할 때 주의하라는 의미이지, 단순히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만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새 공무원 행동강령을 반영, 개정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이날부터 시행했는데, 기존보다 사적 접촉 제한을 더 강화했다.

기존에는 검찰 공무원이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 등과 정당한 이유없이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접촉할 경우 사전이나 사후에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했었다. 개정 강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검찰 공무원이 사건 관계인·변호인 등과의 접촉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식사·음주 등 향응(직무관련자 부담) 등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서면에는 직무관련자의 인적 사항과 만난 일시, 장소, 사유, 비용 부담 여부 등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법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중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반영할 경우 대법원규칙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개정 강령이 지난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이어 법조계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학회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판·검사 등 선후배 법조인들이 친목이나 화합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이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전관예우 등 법조계 불신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골프는 안 되고 테니스는 된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만큼 금지되는 사적 접촉 유형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사생활을 제한하는 것 같다. 도덕에 맡겨도 될 문제까지 법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면서 “검사를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한 선배가 친한 후배들을 모아 밥을 사려고 해도 쉽게 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 전반적으로는 새로운 강령 시행이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법조윤리 전문가인 정형근(61·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의 직무수행은 실제적인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외관상의 공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테니스나 축구 등 다른 운동도 있지만 대개 골프는 접대용으로 이용되다보니 금지되는 사적 접촉 유형에 포함된 것 같다”며 “법조계를 비롯한 공직사회 전반에서 그만큼 전관예우 등 비리가 횡행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어 “직무수행에서 보여지는 외관이 공정하다면 실제 부패로 빠질 가능성도 낮다”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지만, 공직자는 한층 높은 규범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 받아 대출 받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인된 신용절차를 통해 이뤄진 대출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 16명이 대부업체 A사 등 3곳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7다2573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된 자가 작성한 전자문서는 본인 의사에 반해 작성됐더라도 전자문서법에 따라 ‘작성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런 경우 전자문서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봐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인증서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해 발급받은 것이라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작성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믿은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15년 7월 취업을 도와준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보안카드 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 이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기단은 대부업체에서 1억1,9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사기단이 공인인증서를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았으므로 자신들에게 대출금 상환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거래 방법으로 체결된 대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으로 볼 수 없다”면서 “김씨 등은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일 그만했으면 좋겠다” 구두 해고통보는 ‘무효’

부사장이 업무 실수를 한 부하직원에게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두 해고통보는 이 같은 강행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해고 과정에서 엄격한 요식성을 갖추도록 한 법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로 평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의류 유통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73662)에서 최근 원소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1월 10일 총무팀장인 B씨에게 징계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법인인감을 잘못 관리해 담당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였다. B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A사 부사장은 같은 달 18일 B씨의 태도를 지적하며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씨는 이튿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 B씨는 이틀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사장의 발언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한편 A사 인사팀장은 같은 달 25일 B씨에게 “18일 이후 퇴직원 작성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퇴직의사 등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며 “31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퇴직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해 18일자로 퇴직 처리된다”는 내용의 퇴직원 제출 요청을 보냈다. 서울지노위는 이후 지난해 3월 17일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에 “B씨를 복직시키는 등 조치를 하라”고 구제명령을 내렸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 부사장이 B씨에게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은 해고통보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 부사장이 구두로 해고통보한 것은 법에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A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고, 해고에 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서울지노위의 구제명령과 중노위의 결정 등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집행유예 소년범도 취업 자격제한 안 받는다

앞으로 소년범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자격제한을 받지 않게 돼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현행 소년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에게는 자격제한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오히려 실형을 선고받은 소년범보다 더 긴 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난 1월 헌법재판소 결정(2017헌가7 등 병합)에 따른 조치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소년법 제67조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실형을 선고받은 소년범은 형기를 마치면 공무원 임용 등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 같은 특례 대상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는 제외돼 있어 집행유예 소년범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죄가 가벼워 집행유예를 받은 소년범들이 실형을 받은 소년범보다 더 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헌재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해 지난 1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개정 시한을 올 12월 31일까지로 못박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소년범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자격제한과 관련해서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다만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실효·취소된 때에 형을 선고 받은 것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그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 공무원 임용 등 사회활동을 할 때 형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것과 차이가 없고 각 유예 기간을 경과한 경우 더 이상 형의 집행을 받을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리온실 정전 피해소송... 황성영농조합 '패소'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냉·난방기 사용 증가와 원전 가동 중단 등에 따른 전력수급난이 빈번하게 이어지면서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전에 따른 농장이나 사업장 등의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력거래소의 수요예측 실패나 한국전력의 전기설비 관리 부실 등에 따른 정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단전 또는 정전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황성영농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5649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조합은 유리온실을 포함한 4개의 온실에서 오이와 배추, 파프리카 등의 작물을 재배하면서 한국전력거래소와 농업용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해 온실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전기장치를 설치·가동했다. 그런데 전력거래소는 2011년 9월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급증하자 지역별로 순환단전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황성영농조합이 전기를 공급받던 청둔회선의 전기공급이 사고 발생 당일 오후 3시 31분부터 40분간, 오후 4시 4분부터 30분간, 오후 8시 1분부터 9분간 각각 중단됐다.

전력거래소 측은 이후 단전으로 농작물 등에 피해를 본 농가들을 대상으로 배상에 나섰다. 하지만 황성영농조합은 여기서 제외됐다. 이에 조합 측은 2014년 9월 “단전으로 유리온실 내부 온도가 40℃ 이상으로 상승해 오이, 배추 등이 고사하고 파프리카가 토바모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6억 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력거래소는 최대 전력수요를 과소하게 예측해 전력수급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순환단전이 예상됨에도 신속하게 대국민 안내방송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지 않아 순환단전이 시작된 때부터 약 39분이 지난 오후 3시 50분경에야 대국민 안내방송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장의 회신에 의하면 오이, 파프리카가 정상적인 회복이 어렵고 고사되기도 하는 생육 조건은 45℃ 이상에서 3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라며 “유리온실에 대한 전기공급이 중단된 사이에는 2시간의 시간 간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리온실의 온도는 자연환기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그 자연환기의 정도는 천장이 열린 정도에 비례한다”며 “단전 당시 주변 최고기온은 29℃로 천장이 열린 정도가 작아 자연환기가 심하게 억제됐을 경우에는 38~42℃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횡성영농조합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순환단전으로 인해 유리온실에서 재배중이던 작물이 고사했거나 감염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업(UP)계약서’ 요구에 응한 매도인 손실 땀...

공인중개사가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매매가격을 부풀려 기재 하자는 매수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동혁 판사는 토지 매도인 윤모씨가 공인중개사인 송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41402)에서 “송씨는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송씨는 공인중개사로서 자신이 중개한 거래의 거래내용을 진실 하게 작성해야 하는데도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쓴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매도인)윤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씨도 매수인의 업계약서 작성요청에 응한 책임이 있다며 송씨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하지만 법원은 매도인이 받은 과태료에 대해서는 송씨의 배상책임을 인정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과태료는 윤씨의 잘못에 대해 별개로 부과된 것이므로 송씨의 불법행위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윤씨가 성인으로 온전하게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러한 책임까지 (공인중개사인) 송씨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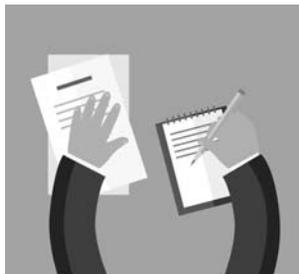
윤씨는 2015년 6월경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땅 3,442㎡를 1억5,600만원에 최씨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거래는 송씨가 중개했다. 그런데 매수인 최씨는 은행에서 토지 구매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윤씨와 송씨에게 매매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적는 소위 ‘업(Up) 계약서’를 작성

하자고 은밀하게 요구했다.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는데 유리하고, 재(再)매각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고 판단한 윤씨는 최씨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송씨도 매매가를 실제 거래 가액보다 80%가량 부풀린 2억6,000만원이 적힌 계약서에 서명·날인했다.

하지만 이 토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점을 의심스럽게 여긴 세무당국에 의해 업계약서 작성 사실이 발각됐다. 결국 윤씨는 8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자경농지 자격으로 받은 2,700만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박탈됐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윤씨는 송씨의 엉터리 중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양도소득세 상당액와 과태료 등 5,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률구조공단, 부유한 농·어업인은 무료 법률구조대상서 제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현)이 부유한 농·어업인은 무료법률구조 대상자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단은 1996년 7월부터 농·수협중앙회와 체결한 무료법률구조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이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해 농업인, 어업인에게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농·어업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재력이 있는 부유한 농·어업인들까지 공단이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공단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자력이 충분한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구조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접수를 받지 않거나 구조기각을 하는 등 내부 기준을 마련했지만 규범화되진 않았다.

이에 공단은 내부 규범인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을 개정해 법률구조대상자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농·어업인’으로 제한했다.

공단 관계자는 “규칙 개정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약자 등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에 집중하겠다”며 “국민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애플코리아,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의무 없어

애플코리아 측이 “아이폰 기기를 초기화하지 말고 잠금해제를 해 달라”는 소비자의 요청을 거부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2013년 10월 아이패드를 잃어버린 뒤 애플코리아에 아이패드 고유번호를 알려준 다음 기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다. 그러나 애플코리아 측은 아이패드의 ‘MAC(Medium Access Control Address) 주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애플코리아는 그러면서 “아이패드의 화면 잠금 비밀번호는 본인이 아닌 사람이 해제할 수 없도록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기기를 훔친 사람은 화면잠금 해제가 불가능하고 아이패드는 비밀번호 입력실패로 초기화 됐을 것”이라고 김씨에게 안내했다.

이후 김씨는 2015년 2월 아이폰6를 구입해 잃어버렸던 아이패드에 적용했던 애플 아이디로 아이폰6를 동기화시켜 사용했다. 그런데 김씨의 애플 아이디가 해킹당하고 있는 듯한 현상이 나타났고 같은 해 9월 화면 잠금 상태가 됐다.

김씨는 애플코리아 측에 아이폰6의 화면잠금 상태 해제를 요청하면서 기기에 대한 초기화를 실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애플은 잠금해제를 풀어줄 때 기기를 초기화하는데 이럴 경우 김씨가 저장한 자료나 정보가 모두 삭제되기 때문에 초기화를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애플은 김씨의 이같은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김씨는 2016년 11월 “애플코리아 측은 나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권을 회복하기 위해 아이폰6에 대한 초기화 없는 잠금해제를 실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또 “애플코리아 측이 MAC 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절취행위를 방조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아이패드에 보관하고 있던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의 논문, 연구자료 등을 분실해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김씨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3272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코리아 측은 초기화를 수반하지 않는 잠금해제 업무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며 “김씨의 주장만으로는 아이폰6의 초기화를 수반하지 않는 화면잠금 상태를 해제해 줄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애플코리아 측이 아이패드 절취 당시 김씨에게 MAC 주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취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애플코리아 측이 김씨의 잠금해제 요청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해 김씨에게 피해를 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2016년 2월 뉴욕시 브루클린 마약범 수사와 관련해 애플이 연방수사국(FBI) 수사 협조를 위해 마약상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은 애플이 테러범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해 FBI 수사에 협조하도록 한 명령과 배치돼 논란이 있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범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FBI 요청대로 총격 테러범 아이폰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해제하면 수많은 아이폰 사용자를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공익신고,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 신고' 가능해진다

올 10월 18일부터는 공익신고를 할 때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도 변호사를 통해 대리하면 된다. 공익신고 제보자의 신분 유출 우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4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할 때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공익신고를 하려면 신고자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과정에서 신분이 유출돼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이때문에 공익신고에 나서기 주저하는 경우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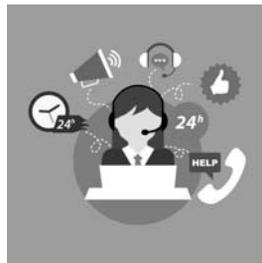
개정법에 따르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때 신고자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된다. 공익신고자의 신분 유출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공익신고는 권익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에도 할 수 있지만,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에는 권익위에만 할 수 있다.

권익위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접수할 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 등 제출된 자료를 봉인해 보관해야 하며, 신고자가 보호나 지원을 원하는 등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법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뒤 정해진 기한 내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다. 또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보호조치 결정의 실효성도 높였다. 현행법상으로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신분노출 우려를 최소화하고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의 이행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공익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내부신고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는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모(당시 40세)씨의 유족이 DB손해보험과 운전자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21848)에서 “강씨는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고, DB손보는 강씨와 공동해 이 가운데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강씨는 당시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고, 차량 운행 속도도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고로 조수석에 동승했던 임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강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임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은 지난해 3월 임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과 강씨를 상대로 “2억5,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DB손해보험은 “임씨는 강씨가 무면허 상태임을 알고도 무상으로 호의 동승했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씨가 강씨의 차량에 호의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했지만, 강씨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강씨는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며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씨가 강씨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씨는 강씨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해 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강씨의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방치하는 등 안전운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3/22 시행법령] 슬기로운 취미생활을 위해 꼭 체크해야 할 전기자전거 관련 법령!

별도의 운전면허 없이도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며,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을 신설하여 이에 맞지 않게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부적합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경우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한 전기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8.3.22.] [법률 제14617호, 2017.3.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나.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저희 식당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구요?

“양심남”씨는 자신의 식당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식사를 제공하고 저녁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술과 안주를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씨의 식당에는 남자 고등학생 3명이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데 그 중 1명은 주방에서 주방장을 보조하고, 나머지 2명은 홀에서 주문을 받고 주문받은 음식을 나르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양씨의 식당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이고,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청소년 3명에 대해 모두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양심남”씨는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양씨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1. 금사월 : 저녁시간에 주로 술과 안주를 위주로 판매한다고는 하나 식사도 제공하는 식당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는게 말이 됩니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까지 받은 양씨의 식당을 청소년금지업소라고 본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2. 신득예 : 저녁부터 양씨의 식당에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행위를 했으니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것은 자명하고, 양씨의 식당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이상 3명의 학생이 맡았던 업무의 성격에 상관없이 그들 모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처분이죠.

☞ 정답은 2번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은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1)항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는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보호법이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 주류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또한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294 판결), 한편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겠다면서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나아가 일반음식점의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위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양심남”씨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은 그 명칭이나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이라는 사실 등에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근무하는 시간대에 주로 주류가 판매되므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씨에게 주방에서 근무하였을 뿐 실제 손님들을 접대하지 않은 1명의 청소년까지 모두 포함하여 3명 모두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게 될 것입니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1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기별 공직자 행위기준

1 상시제한

주 체	내 용	근 거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 의무자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85①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공무원	• 선거운동(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중처벌)	§60① §85②
	• 당내경선 선거인 참여 및 당내경선운동	§57의2③ §57의6
공무원 등*	• 소속직원·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후보자(퇴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 홍보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발표	§86① 1~3호
자치단체장	• 소관사무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그 밖의 광고 출연	§86⑦
	•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와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 (주례 포함)	§113①
누구든지	• 교육적·종교적·직무상 행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85③
	• 교육적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교육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85④
	•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축구회·정당 외곽단체 등의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	§87②

* 공무원(국회의원, 그 보좌관·비서관·비서·지방의회의원 제외), 선상투표 실시 선박의 선장, 정부보유 지분 50/100이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인 상근 임·직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및 구·시·군조직 이상의 대표자

②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제한 ('17. 12. 15. ~ '18. 6. 13.)

주 체	내 용	근 거
자치단체장 (소속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및 신문·방송 포함) 발행·배부·방송	§86⑤
자치단체장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 •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 참석	§86⑥

③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 ('18. 3. 15. ~ 6.13.)

주 체	내 용	근 거
자치단체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방송출연(선거법규정에 의한 방송, 보도·토론방송 제외)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①
	• 신문·잡지 등에 칼럼이나 저술 게재	선거기사 심의기준 §11 3호
누구든지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103⑤

④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 ('18. 4. 14. ~ 6.13.)

주 체	내 용	근 거
자치단체장	•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강·정책, 주의·주장 홍보·선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 * (예외) 창당·합당·개편대회, 후보자 선출대회,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인 방문	§86② 2~3호
	• 통·리·반장회의 참석 (천재·지변·재해, 집단·긴급민원 발생 시 참석가능)	§86②5호
자치단체장 (소속공무원)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 개최·후원	§86②4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초도순시·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 여론을 청취하면서 참석한 소속공무원·임직원·유관기관장·주민 대표에게 통상의 범위 안에서 식서류(지방자치단체장은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112② 4호 라목

※ §86②제4호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전 60일부터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행위 (법 §86②4호 각목, 규칙 §47②)

- ▶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개최·후원
-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개최·후원
- ▶ 천재, 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有償) 교양강좌 개최·후원
-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후원(새로운 강좌 개설, 수강생 증원,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강좌 제외)
- ▶ 집단민원 또는 긴급 민원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 국가유공자 위령제, 국경일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행사 개최·후원
-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 지원

5 선거기간 중 제한 ('18. 5. 31. ~ 6. 13.)

주 체	내 용	근 거
공무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 방문 	§86① 5~7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 제공 	§112② 4호 바목
국민운동단체 주민자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등 일체의 모임 개최 	§103②
누구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를 제외한 기타 연설회(개인정견발표,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 개최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모임의 개최 • 반상회 개최(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 	§103③④

* 공무원(국회의원, 그 보좌관·비서관·비서·지방의회의원 제외), 선상투표 실시 선박의 선장, 정부보유 지분 50/100이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및 구·시·군조직 이상의 대표자

지방선거 주요 일정

시행일정	실시사항	기준일
'18.1.15.(월)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후 15일까지
2. 13.(화)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3. 2.(금)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구청장·시장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3. 15.(목)까지	각급선거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 전 90일까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 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 5.14(월)까지]
3. 15.(목)부터 6. 13.(수)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4. 1.(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군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4. 14.(토)부터 6. 13.(수)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5. 22.(화)부터 5. 26.(토)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5. 24.(목)부터 5. 25.(금)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5. 30.(수)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5. 31.(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6. 1.(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 전 12일에
6. 1.(금)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6. 3.(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6. 8.(금)부터 6. 9.(토)까지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6. 13.(수)	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
	개표 (투표종료후 즉시)	